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##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5년 1월 10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3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일부 개정·시행에 따라 시·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, 신설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재난에 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신설(안 제8조)

5. 검토내용

- 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제3항에

따른 충청북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-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10조의3에 따라 위원장, 심의사항, 위원회 구성, 회의,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상위법령 상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시·도 재난방송협의회는 시·도안전관리위원회에 두어야 하므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충청북도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함.
- 시·도재난방송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17개 시·도 중 광주, 울산, 경기, 충북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, 나머지 13개 시·도는 재난방송협의회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역은 강원, 경북으로 파악되어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요구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'24. 11. 15.~'24. 12. 5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